#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 심사보고서

2021. 10. 19. 복지건설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【성동구청장 제출】 - 의안번호 1648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10. 1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6.

다. 상정일자: 2021. 10. 14.

(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)

### 【대 안】 - 의안번호 1668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. 10. 14. 이민옥 의원(대표발의), 황선화 의원, 임종숙 의원, 은복실 의원 김종곤 의원, 민운기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14.

다. 상정일자: 2021. 10. 14.

(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)

## 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이민옥 의원

나. 제안이유

본 대안은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 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'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보훈예우수당의 금액과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 10조제2항 "3만원"을 "5만원"으로 하고, 제13조제1호 단서를 삭제하며, 안 제15조제1항의 "국경일"을 "광복절"로 수정'하고, 그밖에 저촉되는 문구를 정리하며 기타 내용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는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으로 발의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'계속 1년 이상 거주' 요건을 삭제하고, 금액 개정(안 제10조)
- 나. 수당지급의 중지 내용 중 다른 조문과 배치되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 (제13조)
- 다. 사망위로금 지급 시 '계속 1년 이상 거주' 요건을 삭제(안 제14조)
- 라. 설, 추석, 광복절, 현충일 위문금 지급 규정 신설(안 제15조)
- 마. 환수조치 대상 확대 및 지급대장 정비(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)
- 바. 그 밖에 서로 저촉되는 문구 정리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별첨

다. 기 타: 신구조문대비표 별첨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계속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설, 추석, 광복절, 현충일에 위문금 지급을 신설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본 조례 제정 취지와 운영 목적에 충실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.

###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0조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'계속 1년 이상 거주' 및 안 제1 4조(기존 제15조)의 사망위로금 지급 시 '계속 1년 이상 거주' 요건을 삭제하여, 기존에 성동구에 계속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전출·전입 시 또다시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불합리했던 지급요건을 개정하였고.
- 안 제10조제2항의 수당을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제13조의 수당지급의 중지사유 중 제1호의 "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다만,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"에서 다만 이하는 제14조의 환수조치 규정과 배치되어 불필요한 조항인 바 "다만, 이하 규정은 삭제"하였으며
- 안 제15조에서는 설, 추석, 광복절, 현충일에는 위문금을 지급 할수 있음을 명시하여, 그동안 부재했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습니다.
-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와 부칙, 별지 서식에서는 환수조치 대 상 확대 및 지급대장을 정비하고 그 밖에 저촉되는 문구 등을 수정 정 비하였음

## 《자치구 보훈예우수당 등 비교표》

보훈예우수당		<b>브훈예우수당</b>	사망		
구 명	금액	조건	위로금	위문금	기타
강남구	○(8만원)	주민등록	30만원	설,추석,보훈,생 일 (각5만원)	
강동구	월 5만원	1개월 이상 거주	50만원	× (설,추,보 각 3만원)	
강북구	○(2만원)	3개월 이상 거주	×	× (설,추,보 각2만원)	
강서구	○(5만원)	주민등록	0	× (설,추,보 각2만원)	
관악구	○(2만원)	"	0	○ (설,추,보 각2만원)	
광진구	○(3만원)	"	0	설,추석,보훈 (연10만원 내)	
구로구	○(3만원)	"	0	○ (설,추,보 각2만원)	
금천구	○(3만원)	1년 이상 거주	30만원	○ (설,추,보 각2만원)	
노원구	○(1만원)	주민등록	20만원	× (추2만,보3만)	
도봉구	○(2만원)	1년 이상 거주	15만원	× (설,추2만 보3만)	
동대문구	○(3만원)	규정없음	20만원	설,추석,보(3만)	
동작구	○(2만원)	주민등록	0	" (2만)	
마포구	○(3만원)	3개월 이상 거주	20만원	광복절, 호국	
서대문구	○(2만원)	주민등록	20만원	× (설,추 2만)	
서초구	○(7만원)	주민등록	30만원	참전유공자 (설,추,보 5만)	배우자 복지수당
성북구	○(2만원)	3개월 이상 거주	20만원	설,추석,보(2만)	
송파구	월 5만원	주민등록	50만원	명절,보(설,추2 만 보3만)	
양천구	○(2만원)	주민등록, 65세이상	0	× (설,추 1만 보 3만)	
영등포구	○(3만원)	주민등록	30만원	× (설, 보 2만5천)	
용산구	○(5만원)	1년 이상, 65세 이상	20만원	설,추,보(각5만)	
은평구	○(2만원)	3개월 이상 거주	20만원	× (설 4만)	
종로구	5만원이하 (3만원)	1년 이상 가주	20만원	× (설,추,보 각 5만원)	
중구	월 7만원	3월 이상 거주	20만원	설,추석,보훈 각 5만원	
중랑구	월 2만원	주민등록	40만원	× (추,보 3만)	
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자치구에 비해 성동구는 보훈예우수당과 사 망위로금의 지급조건에서 '계속 1년 이상 거주'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각 구마다 상이한 조례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등 지급대 상자 수혜에 만전을 기하였음.
-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본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여 보훈문화 및 독립운동 정신 확산에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되며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등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범 위 내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, 타 자치구와의 비교수 준 고려 및 우리 구 차원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 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사료되는 바,
  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, 서울시와의 수당 및 위문금의 중복 지급 여부 등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6. 질의 및 답변: 회의록 참조
- **7. 토론요지:** 없음
- 8. 심사결과: 심사 중 이민옥 의원을 대표로 황선화 의원, 임종숙 의원, 은복실 의원, 김종곤 의원, 민운기 의원으로부터 공동 대안 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표결한 결과,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가결 하였음 ※대안 및 조문대비표 첨부 (별첨)
- 9. **기타 필요한 사항**: 없음

#### [별첨]

##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(이민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1668

발의연월일: 2021. 10. 14.

발 의 자: 이민옥, 황선화, 임종숙,

은복실,김종곤,민운기

의원

#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2021년 10월 1일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2021년 10월 1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시 개정조례안에 없는 조문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·보완하기 위함

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○ 본 대안은 성동구청장이 제출한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'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보훈예우수당의 금액과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0조제2항 "3만원"을 "5만원"으로 하고, 제13조제1호 단서를 삭제하며, 안 제15조제1항의 "국경일"을 "광복절"로 수정'하고, 그 밖에 저촉되는 문구를 정리하며 기타 내용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는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

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 으로 발의함

○ 「구청장 제출 개정안」과 「이민옥의원 대표발의 대안」을 일괄 심사한 결과, 「대안」을 가결하고 「구청장 제출 개정안」을 폐기한 후 「대 안」을 「이민옥의원 대표발의안」으로 제안하기로 함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'계속 1년 이상 거주' 요건을 삭제하고, 수당 금액 개정(안 제10조)
- 나. 수당지급의 중지 내용 중 다른 조문과 배치되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(제13 조)
- 다. 사망위로금 지급 시 '계속 1년 이상 거주' 요건을 삭제(안 제14조)
- 라. 설, 추석, 광복절, 현충일 위문금 지급 규정 신설(안 제15조)
- 마. 환수조치 대상 확대 및 지급대장 정비(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)
- 바. 그 밖에 서로 저촉되는 문구 정리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, 별첨

다. 기 타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휴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#### (이민옥 의원 대표발의)

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"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" 를 "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"로 하고, 제2항 본문 중 "3만원"을 "5만원"으로 한다.

제13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,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위문금 지급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설, 추석, 광복절, 현충일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문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6조(종전의 제14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수당"을 "수당, 위로금, 위문금(이하 이 조에서 "수당 등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제2항 중 "수당"을 각각 "수당 등"으로, 같은 항 중 "아니 한"을 "아니한"으로, "징수 할"을 "징수할"로 한다.

제14조(종전의 제15조) 제1항 본문 중 "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"를 "제3조에 해당하

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"를 "관계"로 한다.

제17조(종전의 제16조) 중 "및 사망위로금"을 "등"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#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대장(제17조 관련)

지급		지 급 대	상 자		지 급 내	역	
날짜	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	종 류	은행명	지급계좌
					수 당		
					시맹위로금		
					위문금		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 (대 안)
제10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구	제10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-
청장은 제3조제1호와 제3호, 제	
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	
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	
주민등록을 <u>두고, 계속 1년 이</u>	<u>두고 거주하는 사람</u>
<u>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</u>	<u>에게</u>
<u>위에서</u> 보훈예우수당(이하"수	
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	
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지	
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	
제외한다.	<b>.</b>
② 수당은 매월 3만원으로 한	② <u>5만원</u>
<u>다.</u>	
제13조(수당지급의 중지) 구청장	제13조(수당지급의 중지)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	
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.	
1.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	1
전출 등으로 집급 사유가 소멸	
된 경우 다만, 이미 지급한 수당	〈단서 삭제〉
은 환수하지 않는다.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제14조</u> (환수조치) ① 구청장은 다	<u>제16조</u> (환수조치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
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 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를 하는 경우, 수당을 반환할 사 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5조(사망위로금 지급) ① 구청 제14조(사망위로금 지급) ① ---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 ---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

<u>수당, 위로금, 위문금</u>
(이하 이 조에서 "수당 등"이라
한다)
1. (현행과 같음)
2 <u>수당 등</u> -
②
수당 등
<del></del>
아니한
 <u>징수할</u> -
<del></del>

- 제15조(위문금 지급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설, 추석, 광복절, 현충일에 위문금 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위문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 장이 따로 정한다.

전유공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위로금 지급대 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 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관 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 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16조(수당지급대상자의 관리) 구청장은 수당지급대상자를 관 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 다.

제17조 ~ 제19조 (생 략)

[별지 제3호서식]

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

지급		지 급 대	l 상 자		지 급			귀 역	
날짜	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	종	류	은행명	지급계좌	
					수	당			
					사망	사로금			

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
<u> 가</u>
관계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수당지급대상자의 관리) -
<del></del>
등
<u> </u>
· <u>제18조</u> ~ <u>제20조</u> (현행 제17조부
터 제19조까지와 같음)
별지 제3호서식]
<u>보훈예우수당 등 지급대장</u> (제 17조 판련)

지급		지 급 다	l 상 자	지 급 내 역			
날짜	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	종 류	은행명	지급계좌
					수 당		
					사망위로금		
					위문금		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I. 비용추계 요약

- 1. 비용발생 요인: 보훈예우수당 거주요건 개선 및 보훈위문금 지원에 따른 비용
- 2. 비용추계의 전제: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원
-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연도 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사회보장적수혜금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6,262,500
총 비용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6,262,500

#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연도 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사회보장적수혜금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6,262,500
총 비용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1,252,500	6,262,500

5. 작성자: 복지정책과 행정7급 정윤희(02-2286-5017)

#### Ⅱ. 비용추계 상세내역

○ 보훈예우수당 50천원 × 1,610명 × 12개월= 966,000천원

○ 사망위로금 200천원 × 100명 = 20,000천원

○ 광복절 위문금 100천원 × 55명 = 5,500천원

○ 명절 위문금 20천원 × 2,900명 × 2회 = 116,000천원

○ 보훈의 달 위문금 50천원 × 2.900명 = 145.000천원

### < 관계법령>

## □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 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  - 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(이하 " 공훈선양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  - 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
  - 3의2. 희생·공헌자의 발굴
  - 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  - 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